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단125147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신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변론 종결**2021. 11. 30.

**판결 선고**2022. 1. 25.

##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 지분 1/8에 대하여 2020. 3. 22. 체결된 매매계약은 38,693,22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693,2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중 "31,589,488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계산 결과에 따라 "38,693,228원"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20. 1. 10. C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20. 4. 1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 2. 14. C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20. 8. 1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한 5,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는 원고에게, 2020. 2. 10. 1,000만 원, 2020. 3. 11. 1,000만 원, 2020. 3. 24. 600만 원, 2020. 4. 10. 100만 원, 2020. 4. 16. 900만 원, 2020. 12. 23. 1억 1,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C의 위 각 변제금은 아래의 변제충당계산표와 같이 변제충당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31,589,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1. 30.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7,103,740원(= 31,589,488원 × 연 24% × 342/365, 원 미만 버림) 합계 38,693,228원이다.

|                 |                 |                |   |           |                 |                 |               |               |   |               |               |                |   |
|-----------------|-----------------|----------------|---|-----------|-----------------|-----------------|---------------|---------------|---|---------------|---------------|----------------|---|
| 2020.0<br>2.10. | 10,000,0<br>00원 | 90,000<br>,000 | 0 | 24.<br>00 | 2020.0<br>1.10. | 2020.0<br>2.10. | 1,888,<br>524 | 1,888,<br>524 | 1 | 1,888,<br>524 | 8,111,<br>476 | 81,888<br>,524 | 0 |
| 2020.0<br>3.11. | 10,000,0<br>00원 | 90,000<br>,000 | 0 | 24.<br>00 | 2020.0<br>1.10. | 2020.0<br>3.11. | 3,659,<br>016 | 3,659,<br>016 | 2 | 3,659,<br>016 | 6,340,<br>984 | 75,547<br>,540 | 0 |
|                 |                 | 54,000<br>,000 | 0 | 24.<br>00 | 2020.0<br>2.14. | 2020.0<br>3.11. | 956,06<br>5   | 956,06<br>5   |   | 956,06<br>5   | 0             | 54,000<br>,000 | 0 |
| 2020.0<br>3.24. | 6,000,00<br>0원  | 81,888<br>,524 | 0 | 24.<br>00 | 2020.0<br>3.12. | 2020.0<br>3.24. | 723,28<br>5   | 723,28<br>5   | 2 | 723,28<br>5   | 5,276,<br>715 | 76,611<br>,809 | 0 |
|                 |                 | 54,000<br>,000 | 0 | 24.<br>00 | 2020.0<br>3.12. | 2020.0<br>3.24. | 461,58<br>9   | 461,58<br>9   |   | 461,58<br>9   | 0             | 54,000<br>,000 | 0 |
| 2020.0<br>4.10. | 1,000,00<br>0원  | 76,611<br>,809 | 0 | 24.<br>00 | 2020.0<br>3.25. | 2020.0<br>4.10. | 892,01<br>0   | 892,01<br>0   | 2 | 892,01<br>0   | 107,99<br>0   | 76,503<br>,819 | 0 |
|                 |                 | 54,000<br>,000 | 0 | 24.<br>00 | 2020.0<br>3.25. | 2020.0<br>4.10. | 503,61<br>6   | 503,61<br>6   |   | 503,61<br>6   | 0             | 54,000<br>,000 | 0 |
| 2020.0          | 9,000,00        | 76,503         |   | 24.       | 2020.0          | 2020.0          | 314,82        | 610,42        |   | 610,42        | 8,389,        | 68,114         |   |

|                 |                  |                |   |           |                 |                 |                |                |   |                |                |                |   |
|-----------------|------------------|----------------|---|-----------|-----------------|-----------------|----------------|----------------|---|----------------|----------------|----------------|---|
| 2020.0<br>2.10. | 10,000,0<br>00원  | 90,000<br>,000 | 0 | 24.<br>00 | 2020.0<br>1.10. | 2020.0<br>2.10. | 1,888,<br>524  | 1,888,<br>524  | 1 | 1,888,<br>524  | 8,111,<br>476  | 81,888<br>,524 | 0 |
| 4.16.           | 0원               | ,819           | 0 | 00        | 4.11.           | 4.16.           | 7              | 5              | 2 | 5              | 575            | ,244           | 0 |
|                 |                  | 54,000<br>,000 | 0 | 24.<br>00 | 2020.0<br>4.11. | 2020.0<br>4.16. | 213,04<br>1    | 413,06<br>9    |   | 413,06<br>9    | 0              | 54,000<br>,000 | 0 |
| 2020.1<br>2.23. | 115,000,<br>000원 | 68,114<br>,244 | 0 | 24.<br>00 | 2020.0<br>4.17. | 2020.1<br>2.23. | 11,853<br>,820 | 11,853<br>,820 | 1 | 11,853<br>,820 | 56,260<br>,424 | 11,853<br>,820 | 0 |
|                 |                  | 54,000<br>,000 | 0 | 24.<br>00 | 2020.0<br>4.17. | 2020.1<br>2.23. | 8,912,<br>219  | 8,912,<br>219  | 2 | 8,912,<br>219  | 22,410<br>,512 | 31,589<br>,488 | 0 |

## 나. C의 재산처분행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와 C의 형 D, C의 누나 피고가 각 1/8 지분, C의 어머니 E가 5/8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C는 2020. 3.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 1/8을 피고에게 매매가액 6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C와 피고 사이의 위 지분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0. 3. 2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C의 재산상태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금 채무(251,606,187원, 을 제10호증), E에 대한 차용금 채무(합계 372,208,445원(= 242,436,382원 + 129,772,063원), 을 제11호증 및 피고의 2021. 3. 2.자 준비서면 제5, 6쪽 표 참조}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원금 138,615,081원(=

84,615,081원 + 54,000,000원, 위 변제충당계산표 참조)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피고는, 불법 사채업자인 원고가 연 6% 이상의 이자 약정을 한 것은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를 위반하여 약정 전부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의 소비대차약정이 민법 제103조나 제104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인데 C는 누나인 피고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는바, C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앞서 본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시기, C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동담보의 부족으로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는 C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억 원이 실질적으로 C의 재산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C의 지분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41,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과거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현재 C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C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목적이 C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로 채무자 C에게 지급된 매매대금 대부분이 주식회사 F, E 등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6억 2,500만 원으로 2020. 3. 26. 주식회사 F에 251,606,187원을 변제하고, E에게 242,436,382원과 129,772,063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재산상태, E가 C와 피고의 어머니인 점, 이 법원의 주식회사 G(감정인 : H)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의 시가는 합계 8,545,836,000원으로서 그 1/8 지분의 가액은 1,068,229,500원으로 평가되는데 C는 누나인 피고에게 6억 2,500만 원에 지분을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그 매매대금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20년경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 변동이 거의 없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갑작스럽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가 급상승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시세를 너무 높게 산정한 위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감정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의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어 그 감정 결과를 믿어서는 안 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는 C의 지분에 다른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금액이 합계 13억 24,042,569원(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 2012. 8. 31.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60,000,000원 + 2019. 5. 8.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42,436,382원 + 2019. 9. 17.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51,606,187원)이어서 위 지분은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또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10, 11,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672,000,000원, 채무자 E인 2012. 8. 31.자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288,000,000원, 채무자 E인 2019. 5. 8.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지분 1/8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3억 2,500만원, 채무자 C인 2019. 9. 17.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2012. 8. 31.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560,000,000원, 2019. 5. 8.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42,436,382원, 2019. 9. 17.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51,606,187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합계 2억 7,000만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의 지분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시가는 1,068,229,5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C의 지분에서  $682,568,765원 = 1,068,229,500원 - (270,000,000원 + 560,000,000원 + 242,436,382원) / 8 - 251,606,187원$ 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남아 있다.

피고는,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판결을 예로 들면서 C의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볼 때에 공유자들의 공동채무 전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2. 8. 31.자 근저당권과 2019. 5. 8.자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E이고 C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바, 물상보증인인 C의 지분에 대하여 채무자인 E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C의 지분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권액과 임대차보증금을 C의 지분 비율로 안분한 금액과 C의 지분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또한 피고는, C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소득 2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였으므로 C의 채무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C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것을 막는 등 가족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C의 지분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266조 제2항에 따른 공유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가.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E, D, 피고는 2020. 5. 23. J,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 2020. 6. 10. J,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8 지분의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나. 가액배상의 범위**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236915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의 범위는 공동담보가액과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C의 지분에서 682,568,765원(= 1,068,229,500원 - (270,000,000원 + 560,000,000원 + 242,436,382원)/8 - 251,606,187원)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남아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 피담보채무액이나 임대차보증금액수가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의 지분 가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과 같은 금액 이상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C의 지분 가액 1,068,229,500원 중 적어도 위 682,568,765원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이 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현재 C에 대하여 38,693,228원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둘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8,693,228원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38,693,2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8,693,2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손해정**

별지